번호	소관부서	key word	질의	응답
1	격리관리팀	문자발송	■ 양성통지 문자 격리참여 등록 기준 문의드립니다. ※ 14판 13p 지침 문구 '단, 양성확인통지 및 격리참여자 등록은 보건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②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날짜가 지나도 보건소에선 시스템적인 설정이 가능한 건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③ 보건소에선 시스템적인 설정이 불가할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④ 의료기관 신고지연, 보건소 통보 지연 상황이 발생하여 실제 통지되어야 할 날짜보다 지연되었을때의 대처 방법 확인요청드립니다.	○ 23.8.31.부터 확진자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기존 확진자 자기기입조사서 링크가 23.8.31.(0시)부터 문자 내용이 변경됩니다. ○ 참여자 등록방법 (기존: 자기기입조사서 링크를 통해 작성, 역학조사관 전화확인, 격리자 본인 신청 변경: 확진검사방법에 관계없이 확진, 확진자 신고일, 양성확인통지일이 23.8.30. 대상) * 실제, 의료기관 등 검사 신고기한이 24시간으로 23.8.30. 검사하여 양성신고지연이나 야간신고 등 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 확진자 신고을 받지 않음은 확진자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을 의미, 이후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8.30. 확진후 양성확인자 통보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8.31.(0시)부터 변경된 문자로 안내됩니다. ① 탄력적으로 적용될수 있다는 내용은 8.30. 확진자가 당일 통지되지 않을경우 다음날 문자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으로 해석 ② 질병청 시스템으로 처리가 안될시 보건소 자체적으로 문자발송 가능 ③ 보건소, 지자체 책임하에 대응할 필요 ④ 의료기관 신고가 격리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 경우 생활지원 신청 불가가 원칙, 의료기관 신고는 정시에 이루어졌으나 보건소 양성확인통지가 지연된 경우 보건소 자체판단으로 대응
2	격리관리팀	문자발송	③ 기타 ○확진자에 대한 확진 통보 및 격리 유무 확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 확진 이후 건강상태 악화로 회사에 병가나 공가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혹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양성 확인 문자 등' 외에는 이제는 별도의 격리 증빙하는 자료가 없는게 맞는지?	○ 8.31.이후 확진자에 대한 양성확인 통지 및 격리참여안내와 관련하여 질병청 차원의 별도 안내는 없습니다.
3	격리관리팀	생활지원비	■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①. 4급 하향시 격리권고 문자를 받은 날짜 기준 해제일 다음날로부터 신청으로 안내를 드리면 될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ex) 8.30 검체채취후 확진되어 8.30~9.3 격리기간으로 문자 받은자는 9.4일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 8.31. 검체채취 확진자는 격리기간은 9.3.까지 9.4.부터 90일 이내 신청 맞습니다.
4	격리관리팀	생활지원비	30일 검사, 확진, 신고 31일 양성자통보의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가능하다고 하셨나요?	○ 30일 확진되었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 31일 하루 양성확인통지문자 발송 및 격리참여자 등록 가능하도록 조치(31일 문자발송 전 30일 확진자 여부 확인 철저 요망) 했습니다.

5	격리관리팀	생활지원비	30일 검사, 확진, 신고 31일 양성자통보의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가능하다고 하셨나요? 신고도 30일이요	○ 30일 확진 31일 신고는 안내문자로 직접전화로 참여 신청 가능함을 안내예정입니다.
6	격리관리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대상이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8월 30일 오후에 진료하러 와서 양성확인통지가 8월 31일에 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8월 30일까지는 여전히 코로나19는 2급이므로 검사 이후 24시간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격리기간의 기준은 검체채취일입니다. ** 대상을 8월 30일에 검사한 사람으로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해당 관련하여서 의료기관에서 웹신고를 늦게하여 지연될시에 지원금등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고 하여 반발이 많습니다.	○ 30일 확진되었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 31일 하루 양성확인통지문자 발송 및 격리참여자 등록 가능하도록 조치(31일 문자발송 전 30일 확진자 여부 확인 철저 요망) 했습니다.
7	격리관리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대상이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8월 30일 오후에 진료하러 와서 양성확인통지가 8월 31일에 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8월 30일까지는 여전히 코로나19는 2급이므로 검사 이후 24시간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격리기간의 기준은 검체채취일입니다. ** 대상을 8월 30일에 검사한 사람으로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해당 관련하여서 의료기관에서 웹신고를 늦게하여 지연될시에 지원금등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고 하여 반발이 많습니다. @답변주신것을 정리하면, 8월 30일 검사자중 보건소 PCR 검사자는 8월 31일날 결과가 나와서 생활비 지원대상이 안됨(이에 대한 안내 필요)/ 단, 의료기관에 RAT 검사자는 당일 검사결과가 나오지만, 오후 늦게 검사하여 양성통지가 8월 31일날 되는 사람은 생활비지원대상이 됨.. 이게 맞나요?	○ 30일 확진되었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 31일 하루 양성확인통지문자 발송 및 격리참여자 등록 가능하도록 조치(31일 문자발송 전 30일 확진자 여부 확인 철저 요망) 했습니다.
8	격리관리팀	생활지원비	지침 25쪽 관련입니다 8월 30일은 감염병 2급으로 24시간이내 신고하면 되는데 30일 검체채취자의 경우 31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30일 검체채취자에 대해서 31일 확진 받을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2칸은 모두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요	○ 30일 확진자까지 생활지원 가능, 31일 확진자는 불가합니다.
9	방역시스템	시스템	8.31일 이후는 선별진료소 양성자 신고체계가 is시스템상에 의뢰하지 못하는데 검사의뢰,통보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 선별진료소는 양성자 검사 기관은 아니지만 코로나19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PCR 검사, 보완연 연계등은 유지됩니다. - PCR 검사결과는 시스템상에서 발송가능(문자내용 공문공유)

10	복지부	진료거부	○응급실 등 의료기관 출입시 병원에서는 사전 PCR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일반환자 및 보호자들이 검사 결과 제출을 원하지 않을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병원에서 입원이나 내원을 받아주지 않을 때 진료 거부(의료법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과거 복지부에서는 유권 해석으로 격리해제 후 혹은 환자들에 대해서 과도한 PCR 검사를 요구하며 검사를 하지않을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였으나, 타 지침에서는 의료기관 자체 감염관리 조치에 맡기도록 되어있는 상태	○ 현재, 이 내용에 관해 설명하기는 어려움 이후 내용은 복지부 확인 필요 사항으로 보임니다.
11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비대면진료	○ (진료)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진료 가능 - 그 동안 확진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가능한게 맞나요?	○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는 '23.8.31.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2단계 조치)되어 확진되더라도 초진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대면진료를 통해 확진된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추가하였으며,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지자체 공문 시행 예정)
12	복지부 보험급여과	검사비용	① 응급분만환자대상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단되었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선별목적으로 PCR검사 1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160호, 8.30.) 확인 가능하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3	복지부 보험급여과	검사비용	의료기관 무료선별검사 기준에서는 먹는치료제 해당군 제외하곤 나머지 다 삭제되었는데, 그전엔 의사 소견,판단하에 검사가능하다는 항목도 있어서 병원내에서 응급상황일시 무료검사 진행했었는데요... 응급환자가 오더라도 비보험수가로 PCR 검사 받는수밖에 없나요? 병원에서 민원걱정을 엄청하십니다 ㅠ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및 응급분만환자에 대해 선별목적으로 PCR검사 1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160호, 8.30.) 확인가능하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4	상황관리팀	집계기준	8/30일 16시 집계까지만 확진자 번호부여가 되는것 아닌가요?? 방금 24시 집계까지라고 하셔서요	○ 진단일 기준, 8.30. 16시 집계 이후 미집계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 집계(8.31.~9.1.)를 통해 확진자 번호를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15	상황관리팀	확진자번호	확진자 번호부여는 언제까지 마감인가요?	○ 진단일 8.30. 24시 기준으로 기존 전수 신고 체계는 종료됩니다. 단, 미집계건에 대한 확진자 번호부여 및 오신고, 정보변경 등 처리를 위해 일정기간(8.31.~9.1.) 시스템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16	상황관리팀	확진자신고	보건소 선별에서 8.30 pcr검사하고 8.31 확진이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양성신고 의무는 없는거죠?	○ PCR 검사를 8.30. 시행하셨다면, 감염병예방법 제2급감염병 신고대상자로 기존처럼 신고(진단일 8.30. 기재)하시면 됩니다.
17	상황관리팀 방역시스템운영팀	문자발송	4급전환시 지정병원 제외하곤 신고의무없다고 하는데,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신고의무없음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선별에서 확진판정받으신분은 보건소 내에서 알아서 연락 드려야되나요..? 양성통지, 문자 의무없다고 하셨는데 혼란이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양성자 검사 기관은 아니지만 코로나19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PCR 검사, 보완연 연계등은 유지됩니다. - PCR 검사결과는 시스템상에서 발송가능(문자내용 공문공유)
18	상황관리팀 방역시스템운영팀	시스템	31일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확진자 신고 중단된다는 내용이 의료기관에 공지가 간 것일까요?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이 확인가능하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탭마다 8.31부터 활성화/비활성화 여부 정리해서 시스템 공지띄워주십시오	○'23.8.29. 17개 시도에 전수감시(확진자 집계) 종료 및 협조사항 알림 공문(중앙방역대책본부-10093)이 발송되었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에 공지사항 올려놓았습니다.
19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역학조사는 전면으로 사라지고 감염취약시설만 조사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지침 참고하여, 인지된 감염취약시설의 집단발생에 대하여 대응바랍니다.
20	역학조사팀 진단총괄팀	집단발생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인지 시 확진자의 접촉 입소자들은 보건소에서 판단하에 검사 가능한가요?	○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인지 지 확진자의 접촉 입소자들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판단하에 검사 가능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전에 검사 협의필요합니다. 다른 감염병관리처럼 관리 그러나, 보건소 우선순위 대상은 아님니다.

21	자원지원팀	먹는치료제	먹는치료제 제조기관(약국)은 기존처럼 제약회사에서 약배송 받아서 쓰는건가요? 그럼 지금 미리 약 신청해야 31일부터 가능할거같은데요....	○ 먹는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약품 신청하면 공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11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자원지원팀	방역물자	방역물자 지원 종료라는 것은 감염취약시설이나 선별진료소에도 지원이 종료가 되는 것인가요?	감염취약시설이나 선별진료소에 방역물자지원이 종료됩니다. (23.8.23. 보도자료 참고)
23	자원지원팀 환자관리팀	먹는치료제	타의료기관에서 확진받고 치료제 처방을 받기위해 치료제 처방의료기관으로 방문한경우 의료진이 확진여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빙서류 첨부하고 처방해야 하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 A 병원이 검사 및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 기관이라면, 검사 시행 후 양성으로 확인된 자 중 투여 기준에 부합한 자에게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A병원이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해당병원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여 처방받아야 합니다.. 치료제 처방기관 관련은 대응지침 14판 10p 또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11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권장 (진단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등) 합니다. ▶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코로나19 홈페이지,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하므로, 방문 전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확인 필수
24	중수본 병상배정팀	병상배정	"응급환자 전담병상 배정시 병원자체검사..." 응급실의 경우 위급한 환자라서 pcr 검사결과를 병원에서 기다리신다고 할시에 시간이 많이 걸릴수있어서, 응급선별검사 위주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pcr 검사를 해서 확인된 위중증환자만 전담병원 입원시켜야될까요??	○RAT양성 환자 중 응급환자는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병상을 점유하여 치료가 가능하나 PCR 음성 나올시 바로 일반 병상으로 전실해야 하며 청구 수가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임상 상태 확인 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25	중수본 병상배정팀	병상배정	4급 전환 이후에도, 위급상황 및 중증환자에 대한 병상배정을 지원 해야하나요 ? 기 지침에서는 시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급 및 중증환자에 대한 전원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제14판 지침에는 배정 관련 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확인 됩니다. 4급 전환이후에도 시도 및 시군에서 배정체계를 유지해야하나요?	병상배정을 필수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 자원 인력 확진자 상황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병상배정 / 지원 체계 운영하도록 기존 안내드린 내용입니다 위급 및 중증환자는 모두 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의료기관이나 소방 등에서 확진자 수용가능한 의료기관 관련 문의 등이 있을 때 지자체 내 담당자가 대응하시라는 의미입니다

26	중수본 병상배정팀	병상배정	1. RAT 양성자 지정병상에 격리해도 되는지	○RAT양성 환자 중 응급환자는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병상을 점유하여 치료가 가능하나 PCR 음성 나올시 바로 일반 병상으로 전실해야 하며 청구 수가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임상 상태 확인 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27	중수본 병상배정팀	병상배정	② 병상배정 및 치료비 ○사례 정의에서 RAT 양성자가 빠졌는데, 병의원 외래 및 입원시 RAT 비용지원은 하고 있음 -> 응급실 확진자가 x-pert 혹은 RAT 양성일 때 확진자로 보고 입원 및 치료를 할 수 있는지? -> RAT 양성만 확인되었을 때 공식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PCR 검사를 하지않고 전담병상에 입원 시킬 근거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RAT양성 환자 중 응급환자는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병상을 점유하여 치료가 가능하나 PCR 음성 나올시 바로 일반 병상으로 전실해야 하며 청구 수가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임상 상태 확인 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28	중수본 병상배정팀	병상배정	2. 지정병상중 준중증병상 입실기준은 없어진건지요?	○병상 진입기준은 없지만 입원일에 대해서는 전원전실권고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29	중수본 병상배정팀	병상배정	응급환자 전담병상 배정시 병원자체검사로 코로나확진이 되는걸까요?	○RAT양성 환자 중 응급환자는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병상을 점유하여 치료가 가능하나 PCR 음성 나올시 바로 일반 병상으로 전실해야 하며 청구 수가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임상 상태 확인 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30	중수본 병상배정팀	병상배정	진단기준에서 RAT가 빠지고, PCR만 인정된다고하면 응급환자 병상배정시 PCR결과가 나올때까지 배정받지못하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인데 주말이나 연휴시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RAT양성 환자 중 응급환자는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병상을 점유하여 치료가 가능하나 PCR 음성 나올시 바로 일반 병상으로 전실해야 하며 청구 수가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임상 상태 확인 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31	중수본 병상배정팀	병상배정	진단기준에서 RAT가 빠지고, PCR만 인정된다고하면 응급환자 병상배정시 PCR결과가 나올때까지 배정받지못하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인데 주말이나 연휴시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RAT양성 환자 중 응급환자는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병상을 점유하여 치료가 가능하나 PCR 음성 나올시 바로 일반 병상으로 전실해야 하며 청구 수가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임상 상태 확인 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32	중수본 의료대응팀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병원 측에서 8.31.자로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미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지침에 상세히 작성해서 통보 부탁드립니다.	○ 선별진료소 운영지침에 담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참고, 23.8.31.)
33	중수본 지침관리팀	입원치료비	○중증환자의 격리치료비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음 -> 전담병상 이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문제가 없는지? -> 현재 자율입원 병상으로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산소유무 상관없이도 여러 사유로 입원하여 격리치료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중증 환자만 선별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중증 환자 확인 절차가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무분별한 격리에 대한 치료비 미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접수되는 치료비 청구는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음	○ 중증환자의 격리치료비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 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전담병상 이외의 의료기관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의사소견서 상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과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제출 서류 중 진료비 세부내역서을 통해 중증처치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34	지침관리팀	사례정의	대응지침 사례정의에 의하면 PCR 검사 양성자만 확진환자로 인정되는건가요?	○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4판 사례 정의에 의하면 PCR을 통해 확인된 사람으로 확진환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안내」(8.31. 공문발송)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결과도 확진환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는 긴급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35	지침관리팀	입원치료비	① 8.31 이전부터 격리실에서 입원하여 코로나19 치료받은 확진자의 경우라도 8.31부터는 중증환자의 중증 처치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건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② 일반병실에 자리가 없어서 중환자실에서 하루정도 더 격리되었거나, 중증처치는 안받아도 되나, 의료진이 좀만 더 지켜보자고 하였을 때 등. 중증처치는 받지 않고, 중환자실 격리실에 하루정도 더 격리*되어 있던 경우에는 중증처치를 받은 날까지만 지원이 되고, 중증처치를 받지 않고 격리실에서만 있던 하루는 본인부담인 것인지 문의확인요청 드립니다. ③ 변경된 지침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에서 코로나 감염된 경우 중환자 격리실에 입원 시 지원대상인건지 확인요청 확인요청 드립니다. ④ 지원 기간내 전실 혹은 타의과는 관계없이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코로나19 중증처치에 대한 건이 지	① 검체채취일이 8.31.인 확진환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일 확진환자는 지난 지침을 적용합니다. ②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코로나19관련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에 한해 중환자실 내 격리되어 치료받은 기간 동안 만 지원함. 중증처치를 받지 아니한 환자는 미지원 입니다. ③ 감염경로가 국내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④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받은 기간동안 지원됩니다. ⑤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한 경우 지원됩니다.

36	지침관리팀	입원치료비	rat 양성자인데 중증환자인 경우 치료비지원 가능한가요?	①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안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결과도 치료비 지원가능합니다.
37	지침관리팀	입원치료비	격리입원치료비지원이 31일부터 중증환지격리시 지원이 되는거고 rat 검사결과 양성도 인정환자도 되는건가요?	1)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나온 경우도 치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38	지침관리팀	입원치료비	응급환자 전담병상 배정시 병원자체검사... 전담병원이외의 일반자율체계로 입원하시는 환자들에 대한 격리치료비 청구시 위중증 구분이 보건소에서 자체판단하여, 미지급 하기에는 무리가있을듯합니다. 추후 안내시 해당내용도 잘 반영해주시어 안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의사소견서 상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과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제출 서류 중 진료비세부내역서을 통해 중증처치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39	지침관리팀	입원치료비	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집단발생하여 시설 측에서 코호트 격리 희망시 8.31. 이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지원 여부는 아까 말씀하신 심평원 개정안에서 확인 가능할지요?	○ 코호트 격리 관련 지원 없습니다.
40	진단검사운영팀	입영장정	입영 장정은 PCR 무료검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 전환으로 입영장정의 입영 전 PCR검사는 우선순위 검사 대상에서 제외(검사비용 본임부담) 되었습니다.

41	진단총괄과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접촉자 또는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는 pcr 우선순위에 해당될까요?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으로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접촉차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는 PCR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2	진단총괄팀	검사비용	③ 먹는 치료제 처방군의 경우 외래에서 RAT를 시행할 시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불가한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 4급 전환으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RAT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3	진단총괄팀	검사비용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보환연 아닌 위탁기관에 맡길경우,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발생의심으로 검사를 진행했을때, 위탁검사기관에 비용지원이 가능할런지요?	○ 감염취약시설에 집단발생 등으로 역학조사 필요 시, 접촉자 검사는 보건소 관리 하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과-1082.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관리 협조요청(8.30.) 참고) 했습니다. ○ 선별진료소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탁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및 국비 지원 불가입니다.
44	진단총괄팀	무료검사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만 60세 미만자(요양병원 환자, 장애인시설 등)의 경우는 취약시설이라하더라도 불가한지?	○ 요양시설 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건소 무료검사 대상 아니며, 건강보험을 통한 검사비 지원 대상임. 다만, 60세 이상을 사유로 입소자가 검사 요구하는 경우 검사 가능합니다.
45	진단총괄팀	선제검사	또한,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로 유지되는건 맞지요?	네, ○ 유증상, 확진자 접촉 후 등 검사 필요 시 적극 검사받도록 무료 검사 지원됩니다.
46	진단총괄팀	선제검사	3페이지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8페이지 보건소 pcr 선제검사 대상자는 입소자가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 요양시설 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건소 무료검사 대상 아니며, 건강보험을 통한 검사비 지원 대상임. 다만, 60세 이상을 사유로 입소자가 검사 요구하는 경우 검사 가능합니다.

47	진단총괄팀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증상자가 나왔을때 검사인가요? 아니면 종사자는 어떤 경우든 검사가 가능한가요??	○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접촉 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검사 요건에 대한 별도 제한 없습니다.
48	진단총괄팀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내 확진자 발생시 입소자 보건소선별검사 가능할까요	아니오, ○ 감염취약시설에 집단발생 등으로 역학조사 필요 시, 접촉자 검사는 보건소 관리 하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과-1082.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관리 협조요청(8.30.) 참고) ○ 선별진료소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탁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및 국비 지원 불가합니다.
49	진단총괄팀	선제검사	감염취역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입소자 선별진료소 무료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 기존에도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의 입소전 검사는 선별진료소 우선순위 검사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을 통해 검사 지원 하였으며, 변동사항 없습니다.
50	진단총괄팀	선제검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우선순위 검사대상에서 요양시설 입소자는 아닌거죠? 60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검사가능 / 60세 미만 요양시설 입소자는 불가 / 맞나요?	○ 요양시설 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건소 무료검사 대상 아니며, 건강보험을 통한 검사비 지원 대상임. 다만, 60세 이상을 사유로 입소자가 검사 요구하는 경우 검사 가능합니다.
51	진단총괄팀	선제검사	선제검사 대상 현행을 보면 감염취약시설입소자가 대상이고 8.31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만 인데 장애인복지시설등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 선제검사 대상은 현행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대상이며, 입소자는 지원대상 아닙니다. ○ 요양시설 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건소 무료검사 대상 아니며, 건강보험을 통한 검사비 지원 대상임. 다만, 60세 이상을 사유로 입소자가 검사 요구하는 경우 검사 가능. 지원 대상 시설 세부 내역은 보험급여 고시 확인 필요합니다.

52	진단총괄팀	선제검사	종사자 선제검사 주 1회 인가요?	○ 별도의 횟수 제한 없습니다.
53	진단총괄팀	진단검사	1. 진단기준에서 PCR중 신속PCR이 포함되는것인가요? 통상적으로 응급실에서는 신속 PCR 검사를 이행합니다.	○ 네, 식약처 정식 허가받은 PCR 진단 시약 제품을 사용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54	진단총괄팀	진단검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에서 기존에는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도 가능했는데, 현재는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 나오면 그 해당 접촉자들 혹은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하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PCR 가능한가요?	○ 감염취약시설에 집단발생 등으로 역학조사 필요 시, 접촉자 검사는 보건소 관리 하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과-1082.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관리 협조요청(8.30.) 참고) ○ 선별진료소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탁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및 국비 지원 불가입니다.
55	진단총괄팀	진단검사	역학적 연관자 무료검사 중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면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진단 검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목적으로 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 감염취약시설의 역학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우선순위 검사자(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6	진단총괄팀	진단검사	입원환자의 상주보호자 '1인'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대상자로 내려왔는데, 방금 설명으로는 교대보호자여도 '인원수 제한 없이' 입원 중 환자의 보호자는 항시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상주보호자 1인으로 검사 제한되어, 환자 1명의 증빙서류로 동시에 여러 명의 보호자 검사는 불가합니다. 다만, 동일한 보호자에 대한 검사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57	진단총괄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검사비용	② 먹는 치료제 처방을 위해선 증상유무라는 기준이 있는데,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먹는치료제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일 경우 증상유무 상관없이 무료검사 대상인가요?	○ 건강보험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160호, 8.30.) 참고,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급여 적용 및 국비 지원을 통한 무료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입니다.

58	진단총괄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진단검사	○PCR 우선순위 대상자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가 빠짐 -> 추후 가족, 고위험 접촉자, 감염취약시설 혹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 및 금액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해당 검사 비용을 선별진료소 검사 위탁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진단검사 시스템에서 어떤 항목으로 검사자 등록을 해야되는지? 받을 수 없다면, 별도 조치없이 의료기관으로 검사 및 진료 안내하고 끝내야 되는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입원전 검사 혹은 보호자 검사'는 지원 불가능한지?	○ 유증상자의 감염 여부 확인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 단, 유증상의 먹는치료제 처방군의 PCR 검사비는 무료, RAT 검사비는 본인부담금 50% 발생, 그외 급여 미대상은 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 8.30.) 참고,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감염취약시설에 집단발생 등으로 역학조사 필요 시, 접촉자 검사는 보건소 관리 하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과-1082.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관리 협조요청(8.30.) 참고), 선별진료소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탁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및 국비 지원 불가합니다. ○ 일부 고위험 입원환자(응급실,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외에는 입원전 검사 및 보호자 검사 보험급여 적용 대상 아닙니다.
59	총괄조정팀	단계조정	현재 위기대응 '경계'단계 유지인데 '주의'로 하향전환은 언제쯤 예정하시나요?	○ '경계' 단계 유지를 통해 중수본-방대본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4급 전환 이후 조치사항 등 점검이 필요합니다. ○ 유행 상황 및 의료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0	환자관리팀	HIRA	3. HIRA시스템 환자입력은 언제까지 유지 하는지요? 4. 확진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와, 별도 확인시스템 준비중이신가요?	○ 확진자번호가 부여가 된 분들에 한해 HIRA system 등록이 가능하고 그 분들에 대해 환자정보관리 입력이 가능합니다. ○ 확진자번호 부여된 확진자는 퇴원시까지 정보 입력을 요합니다. 다만, 8.31부터 확진자 번호 미부여자는 입력불가하며 관련 공문 발송 완료하였으므로 공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1	환자관리팀	먹는치료제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 중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_심혈관질환에 "고혈압" 도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가능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11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2	환자관리팀	양성자감시	8.31.부터 pcr검사건만 확진사례로 인정한다하셨는데 양성자감시 매뉴얼은 rat확진환자도 신고하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양성자 감시기관은 pcr,rat 둘다 양성신고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양성자 감시기관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별도 감시체계로 코로나19가 4급으로 전환되면 전수감시 및 신고의무가 종료가 됨 하지만, 표본감시인 양성자 감시기관에서는 신고를 요청드렸으며, 먹는치료제 대상은 PCR 또는 RAT 확진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어 양성자는 정의를 별도로 정함,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에서만 양성자 신고를 진행, 선별진료소는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63	환자관리팀	양성자감시	양성자감시는 내년도 진행하는건가요?앞으로계획이나온게있으실까요?	○양성자감시는 내년에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향후 통합호흡기감시체계로 전환 예정입니다.